

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·군수에게 통보

- 면허부여기관이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·군수에게 통보
-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·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비과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

8. 면허의 취소 (법 제169조)

-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
- 면허부여기관은 취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면허를 취소하여야 함
- 면허부여기관이 취소요구 또는 기타사유로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시장·군수에게 통보

VII. 면허세 비과세

1.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(법 제162조)
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

2.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(법 제163조, 영 제126조, 영 제126조의2)

- 제사·종교·자선·기예·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
- “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”라 함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